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여야 하나,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대사, 공사, 영사 등)에게 신고 또는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그 나라 방식에 의하여 훈·위, 입양 등을 하고 신고사건에 관한 증서(훈·위증서, 입양증서 등)를 작성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그 거주지역이 재외공관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본적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증서의 등본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3. 재외국민을 위한 특례절차

● 특례법 개요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오랫동안 호적정리가 되지 아니한 경우가 많고 또 호적정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호적기재의 착오 등이 많으므로 이와 같은 재외국민의 호적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외국민의 취적, 호적정정 및 호적정리를 간소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특례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 특례법에 의한 절차는 호적법에 의한 일반절차에 비하여 첨부서류가 간단하고 그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특례법에 의한 신청을 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재외국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람에 한합니다.

● 특례법과 호적법과의 관계

위 특례법은 재외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호적법상의 일반절차에 의하여 특례를 두 것으로 위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호적법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재

외국민은 위 특례법에 의한 절차 외에 호적법에 의한 일반절차에 따라 신고, 신청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 취적절차의 특례

● 취적대상자

위 특례법에 의한 취적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로서 본적을 가지지 아니한 무적자뿐만 아니라 본적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취적하려고 하는 사람은 취적허가신청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본인의 편의에 따라 취적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지방법원 및 지방 포함)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첨부서류

위 특례법에 의한 취적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신분표
- ②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③ 거류국의 외국인등록부등본 또는 영주권사본
- ④ 타가에서 입적한 자가 가족으로 취적하는 경우에는 제적사유가 있는 친가 또는 생가의 원호적초본(다만 친가 또는 생가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인 때에는 예외)

나. 호적정정절차의 특례

● 신청절차

호적기재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이해관계인이 이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호적정정허가신청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본인의 편의

에 따라 그 호적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지방법원 및 지방포함)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첨부서류

위 특례법에 의한 호적정정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② 거류국의 외국인등록부등본 또는 영주권사본(영주권자의 경우)
- ③ 사유서

● 재외공관장의 조사확인서를 첨부하는 호적정정신청

재외공관장이 호적정정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외무부장관을 경유하여 호적을 정정하려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송부하여야 하나, 재외공관장은 호적의 잘못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조사확인서를 호적정정신청서에 첨부하여 법원의 허가없이 직접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송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호적정정신청은 예전대 성별 “남”이 “여”로, 호주와의 관계 “누이”가 “제”로, 출생장소 일본이 본적지로, 부모의 성명이 조부의 성명으로 착오 기재된 경우 또는 본이나 호인해소사유 기타 당연히 기재되어야 할 신분사유가 빠진 경우 등과 같이 호적 기재의 잘못이 명백히 판명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다. 호적정리신청

호적법상의 신고와 신청에 관한 사항 중 출생, 입지, 입양, 혼인, 사망, 호주상속 등으로 인하여 입적 또는 제적되어야 할 자가 호적부에 정리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호적정리신청서를 제출하여 호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

호적정리신청은 본인 또는 기타 호적상 이해관계인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호적정리신청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본인의 편의에 따라 본인의 본적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첨부서류

호적정리신청서의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② 거류국의 외국인등록부등본 또는 영주권사본(영주권자의 경우)
- ③ 행위지법이 외국법에 의하여 혼인, 이자, 입양 등을 한 경우 또는 출생지, 사망지인 외국에서 출생, 사망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외국 관공서 발행의 혼인 등의 수리증명 기타 이를 증명할 만한 증서
- ④ 혼인, 이자 또는 입양의 경우에는 처, 피이자자 또는 양자의 호적등본



제3장 출입국 및 체류절차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가. 법제정의 취지

법무부는 재외동포에게 출입국과 체류 및 모국에서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그간 재외동포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이중국적의 요구에 담긴 애로사항을 선별 수용하며, 거주국에의 정착을 돋기 위하여 1999년 12월 3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으로 약칭)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 적용대상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를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로 구분하고 있는바, 동 법은 이들에게 적용됩니다.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즉,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이나 이에 준하는 거주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취업·학원 등으로 입학 이주자)로서 아직 영주권 등을 취득하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한편, 「외국국적동포」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즉,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와 부모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이와같은 '외국국적동포'의 범위는, 2001. 11. 29. 헌법재판소가 위 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대하여 1948년 정부수립 시점을 기준으로 외국국적동포를 차별하였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시행령 제3조를 개정하여 해외 이주시점에 따른 외국국적동포간 차별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외국국적동포를 포괄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만, 협약 법에 재외동포체류자격(F-4 비자) 취득자는 단순노무 등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불법체류가 많은 국가의 외국국적동포들에 대하여는 일정한 소명자료를 추가제출하는 경우에만 위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였습니다.

2. 재외국민의 출입국 및 체류절차

가. 입국절차

재외국민은 우리나라 국민이므로 유효한 여권과 영주권 등을 가지고 아무런 제한없이 우리나라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주권자 기타 영주권에 준하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이하 영주권자로 약칭)가 거주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 장기 체류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나라가 있으므로, 영주권자가 우리나라에서 장기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거주하는 국가에 다시 입국할 수 있는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컨대, 미국은 영주권자의 해외체류허용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1년 이상 우리나라에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미국의 이민국에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입국허가 없이 1년 이상 우리나라에 체류하면 영주권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출국절차

재외국민은 유효한 여권과 영주권을 가지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부실한 때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거주국의 공관에서 “영주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거주국의 출입국절차에 따라 확인서는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내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출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다. 특정국가 및 특정지역 여행절차

영주권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여행신고대상지역으로 지정한 특정지역인 북한을 외국에서 여행하고자 할 때에는 여행 5일전 또는 여행후 10일 이내에 재외공관장에게 북한방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내에서 북한을 여행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국민과 마찬가지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령」 절차에 따라 사전에 통일부장관의 방북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영주권국 절차

영주권국을 하고자 하는 영주권자는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사증(visa)을 발급국가 또

는 발급국가의 공관에 반납하여 반납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반납확인서와 거주여권을 가지고 외교통상부 재외국민이주과에 영주귀국신고를 하면 영주귀국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 반납제도가 없는 국가는 우리나라 외교통상부 재외국민이주과에 영주권을 직접 반납하여야 합니다.

영주귀국확인서와 거주여권을 가지고 외교통상부 여권과에 가서 거주여권을 반납하고 여권무효확인서를 발급받아,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여권무효확인서를 제출하면 주민등록을 회복하거나 신규등록을 하여 영주귀국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3.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출입국 및 체류절차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법률상 외국인에 해당하므로 외국인에 대한 대한민국 출입국 및 체류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체류자격(F-4 비자)을 신설하여 동법의 적용대상인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 특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특례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므로 본 책자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및 체류절차를 우선 설명하고 재외동포체류자격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절차

(1) 입국절차

● 사증(visa)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면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공관에서 미리 사증을 받아야 합니다.

사증의 종류에는 체류기간에 따라 90일 이하의 단기사증과 91일 이상의 장기사증이 있습니다.

장기사증 중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발급하는 장기사증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다. 그래서, 일단 단기사증으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내에서는 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하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체류목적에 합당한 장기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여야 합니다.

● 사증발급인정서

사증발급 편의를 위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에 있는 초청자가 사증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서 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 “사증발급인정서”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사증발급인정서”를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송부하고, 그 외국인은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공관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제출하면 간편하게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한번의 사증발급에 한하여 그 효력을 가집니다.

● 무사증 입국

그러나, 우리나라와 사증면제협정이 체결된 국가는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고, 중국, 러시아 등 일부 사회주의 국가와 동남아의 일부 국가 등 30여개국을 제외하고는 사증없이 30일간을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공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는 우리나라와 체결한 협정에 따라 6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공항에서 받을 수 있고, 친척방문, 가족동거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17세 미만이나 61세 이상인 자는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공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마약중독자, 무기소지자, 방랑자 기타 입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2) 체류절차

외국인은 허가받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우리나라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 체류자격

체류자격이란 우리나라에 체류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신분자격을 말하며, 관광·상용·취업 등 34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특히, 취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지정된 균무처에서만 균무하여야 하며, 균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체류기간

체류기간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기간을 말합니다.

외국인이 본래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 이외의 다른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은 대한민국내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1회에 부여하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제18조의2관련)

체류자격(기호)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체류자격(기호)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1. 외교 (A-1)	재임기간	2. 공무 (A-2)	공무수행기간
3. 협정 (A-3)	신분존속기간 또는 협정상의 체류기간	4. 사증면제 (B-1)	협정상의 체류기간
5. 관광통과 (B-2)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6. 일시취재 (C-1)	90일
7. 단기상용 (C-2)	90일	8. 단기종합 (C-3)	90일
9. 단기취업 (C-4)	90일	10. 문화예술 (D-1)	2년
11. 유학 (D-2)	2년	12. 산업연수 (D-3)	경 제24조의2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2년 경 제24조의 2제 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1년

체류자격(기호)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체류자격(기호)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13. 일반연수 (D-4)	2년	14. 취 재 (D-5)	2년
15. 종 교 (D-6)	2년	16. 주 재 (D-7)	2년
17. 기업투자 (D-8)	2년	18. 무역경영 (D-9)	2년
19. 교 수 (E-1)	2년	20. 회화지도 (E-2)	1년
21. 연 구 (E-3)	2년	22. 기술지도 (E-4)	2년
23. 전문직업 (E-5)	2년	24. 예술통행 (E-6)	6월
25. 특정활동 (E-7)	2년	25의 2. 연수취업 (E-8)	2년
25의 3. 비전문취업 (E-9)	1년	26. 방문동거 (F-1)	2년
27. 거 주 (F-2)	3년	28. 동 반 (F-3)	동반하는 본인에 정하여진 기간
28의 2. 재외동포 (F-4)	2년	28의 3. 영 주 (F-5)	상한 없음
29. 기 타 (G-1)	1년	30. 관광취업 (H-1)	협정상의 체류기간

● 장기체류

91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신청하고, 외국인등록증을 교부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을 연장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1년 이상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20세 이상의 외국인은 지문을 찍어야 합니다. 한번 지문을 찍은 외국인은 다시 지문을 찍을 필요가 없으며, 이를 거부하면 체류기간연장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적상실자

대한민국 안에서 국적을 상실한 자 또는 출생한 외국인은 3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이중국적자

대한민국의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이중국적자는 국적선택을 하기 전까지 국민으로 처우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국민처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으로 처우되면 국내에서 체류하는 동안 외국인등록, 체류기간연장허가 등 외국인으로서의 모든 의무가 면제되며, 출입국시에 대한민국여권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국민으로 처우되지 않은 이중국적자는 그가 행사하는 여권을 발급한 국가의 국민으로 취급합니다.

(3) 재입국허가

허가받은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다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출국하기 전에 미리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으로부터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입국허



가는 출국시 공항 소재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에는 1회에 한하여 출입국할 수 있는 단수재입국허가와 재입국허가기간동안 몇 번이고 출입국할 수 있는 복수재입국허가가 있습니다. 재입국허가기간내에 재입국하지 않으면 새로이 사증을 받아야 합니다.

복수사증의 경우에는 그 사증의 유효기간 내에는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출입국할 수 있습니다.

(4) 출국절차

우리나라를 출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자유로이 출국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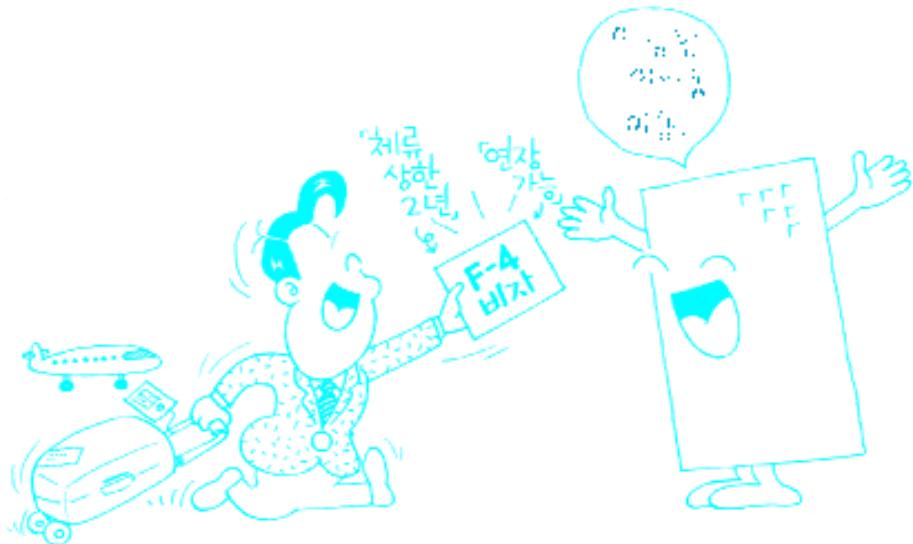
다만, 수사대상이거나 벌금·추징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는 출국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나. 재외동포체류자격

(1) 정 의

「재외동포체류자격」이란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인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함에 있어 특별한 혜택을 주기 위하여 신설된 체류자격(F-4 비자)입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는 외국국적 동포가 원하는 경우에만 발급되는 체류자격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타 외국인으로서 출입국 및 체류가 가능한 비자 등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체류기간 상한이 2년이고, 원칙적으로 연장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단순 노무활동 및 사행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국내에서의 모든 취업활동이 허용됩니다.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때(변호사, 의사 등)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 및 이전신고를 하면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변경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할 경우 재입국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2) 예외사유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신청절차

재외동포체류자격 사증발급신청은 재외공관에서 할 수 있으며, 재외동포체류자격 이외의 자격으로 이미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중인 외국국적동포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의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에 대하여 일정한 결격사유(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사증발급 또는 체류자격변경허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4) 첨부서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자의 경우는 ① 호적등

본·제적등본 기타 본인의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경우는 ①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본인과 직계존속의 외국국적 취득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③ 출생증명서 등 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외공관의 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5) 국내에서의 활동범위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활동에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 단순 노무행위: 단순하고 일상적인 육체노동을 요하는 업무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취업분야
-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행위
 - 사행행위 영업장소 등에의 취업,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종사자로 종사하는 행위,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 등에의 취업 등
-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체류허가기간 및 체류연장허가

재외동포체류자격 (F-4 비자)에 대하여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2년입니다. 외국국적동포가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워킹적으로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

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허가를 하지 않으며, 재외동포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기타 법무부장관이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체류심의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경우에는 연장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국내거소

가. 정 의

「국내거소」란 재외동포가 국내에 입국한 후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재외국민과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 안에 거소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동법상의 혜택을 원하는 동포들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 효 과

재외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할 경우 재외국민에게는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을, 외국국적동포에게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해 주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유사한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해 줍니다. 국내거소신고증은 제반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이의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 및 그 이전신고를 할 경우, 출입국관리법상의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고,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 시 출입국관리법상의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 외에도 국내거소신고를 할 경우에는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는 금융거래 및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외국국적동포는 이에 더하여 부동산거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책자의 해당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첨부서류

국내거소신고시에는 비치된 양식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재외국민의 경우 ① 거주국의 영주권사본 또는 거주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호적등본, ③ 사진 2장(35mm×45mm), ④ 기타 법무부장관이 「재외동포의 출입국및체류심의조정위원회」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서류를,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① 여권사본 및 재외동포체류자격사본, ② 사진 2장, ③ 기타 법무부장관이 위 심의 조정위원회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거소이전신고

재외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한 후 거소를 이전했을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국내주재 외국국적동포의 거소신고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지 아니한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외동포체류자격 이외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는 외국국적동포는 거소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서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후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바. 외국인등록과의 관계

외국인은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며, 외국국적동포도 법률상으로는 외국인이므로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할 경우 외국인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외국국적동포가 외국인등록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내거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 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

다음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①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때
- ② 재외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
- ③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상실한 때
- ④ 재외국민이 해외이주를 포기하고 귀국한 때
- ⑤ 재외동포가 국내에서 사망한 때
- ⑥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체류기간 내에 재입국할 의사없이 출국하는 때

아. 반납시기와 방법

위의 ① 내지 ④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거하는 친족도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가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위 ⑤항)에는 동거자·호주·친족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가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할 수 있습니다.

외국국적동포가 재입국할 의사없이 출국하는 때(위 ⑥항)에는 출국시 출국항을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반납하거나 출국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자. 국내거소신고증의 재발급 사유와 방법

국내거소신고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되 때,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란이 부족하게 되 때 또는 재외동포의 성명·생년월일·국적 및 거주국이 변경된 때에는 이를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국내거소신고증재발급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와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이를 거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내거소신고증이 훼손되거나 성명·생년월일·국적 및 거주국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차.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이란 국내거소를 신고한 재외동포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청에 의해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이 발급해 주는 것으로서 특정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신고사실을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은 제반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등본·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요하는 경우에 주민등록등본·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신청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이용하여 가능하고, 거소관할 사무소가 아닌 사무소, 출장소 또는 분소(세종로, 도심공항)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여권발급절차

가. 개요

여권(passport)은 외국에 여행하는 우리 국민의 신분을 증명함과 동시에 여행국 관계자에게 우리 국민에 대한 편의 및 적절한 보호를 요청하는 문서로서 종류별로는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 국외여행 가능 회수별로는 단수여권과 복수여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권은 외교통상부장관이 발급하며, 대한민국 국민에게 발급되기 때문에 소지인의 국적을 나타내는 중요한 징표로서의 역할도 수행합니다. 따라서 여권과 비자는 엄격히 구분되는 개념이며, 비자(VISA)란 여행하고자 하는 나라에서 자국에 입국하여도 좋다는 승인의 표시를 의미하며, 여행국 정부의 사증을 받아야만 입국이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76개국으로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비자없이 자유로이 여행할 수 있습니다.

나. 여권의 종류와 발급기관

여권은 일반, 관용, 외교관여권의 3종류로 분류 발급하고 있는데, 관용여권은 공무원(또는 준공무원)이 공직업무로 해외에 파견될 때, 외교관여권은 국가 대표성을 가진 공무원이 외국정부와 접촉하거나 외교교섭을 할 때 발급되며, 그외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소지한 자로서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우리 국민에게는 일반여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권발급권자는 외교통상부장관이나, 실무적으로 외교통상부에서는 관용,

외교관 여권만을 발급하고 있으며, 일반여권은 서울시 6개구청(종로, 노원, 서초, 강남, 동대문, 영등포구청)과 광역시, 도에서 외교통상부 여권과의 관리 하에 여권발급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여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시·도 여권발급 대행기관을 통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여권의 발급 절차

여권발급은 그 자체 업무 이외에도 병무업무, 주민등록업무, 경찰업무(신워조사) 등이 상호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해당 여권발급기관에 여권발급을 신청하면 전산확인을 통해 통상 5~6일에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워조사가 「미회보」로 분류된 경우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이내에 신워조사가 처리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되도록 빠른 시일내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라. 여권발급신청시 구비서류

- ① 여권발급신청서 1부
- ② 여권용 사진 2매(3.5cm × 4.5cm)
- ③ 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동의인 인감증명서(18세 미만 미성년자에 해당)
- ④ 병역관계서류(병역의무 해당자에 한함)
- ⑤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재된 자와 개명, 생년월일 정정된 자는 호적등본 1통 추가 제출(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능시)

마. 여권의 유효기간

여권은 국외여행 가능 회수별로 복수여권과 단수여권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복수여권은 5년의 유효기간을 부여하여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회수에 제한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이며, 단수여권은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으며 통상 1년 이내의 유효기간으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여권은 총유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해서 사용가능하며, 연장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전 1년부터 만료 후 1년내에 해야하므로 자신의 여권유효기간 만료일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바. 거주여권

(1) 대상

거주여권은 주재국으로부터 영주허가를 취득한 영주권 소지자 등의 재외동포에게 발급되는 여권입니다. 그 대상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한 자
- ② 보건복지부장관의 국외입양허가를 받은 자
- ③ 거주지국의 영주권 또는 이민사증을 취득한 자
 - 미국의 경우 이민사증 인터뷰 통지서(Packet III 또는 G-56 FORM)를 취득한 자도 포함
- ④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는 다음과 같은 영주권에 갈음하는 장기 체류허가를 받은 자
 - 5년 이상의 장기 체류허가를 받은 자
 - 5년 미만의 체류허가만을 부여하는 국가에서는 전가족이 5년 이상 현지에 거주한 자로 거주지국의 장기 체류허가를 받은 자

※ 상기의 경우, 병역의무자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 또는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후 거주여권 발급합니다.

※ 5년 이상 장기체류라 하더라도 취업, 유학, 상용 등 해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거주여권 발급 불가합니다.
- ⑤ 국외에서 외국인과 혼인한 자 및 그의 동거 자녀
- ⑥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자로서 워국적국에 거주하고자 하는 자

(2) 신규발급

최초로 거주여권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① 여권발급신청서
- ②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 “가” 항 거주여권 발급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③ 국세 납세증명원, 지방세 완납 또는 미과세증명서(국세징수법 제5조, 지방세 법 제38조)
- ④ 병역관계서류(18세이상 30세이하 남자)
- ⑤ 국외이주신고필증(읍·면·동사무소 발행)
- ⑥ 여권용 사진 2매(신청서용 1매, 여권용 1매)

(3) 유효기간 연장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여권기재사항변경등신청서
- ② 여권용 사진 4매(신청서용 1매, 신워진술서용 3매)
 - 14세미만자 : 여권용 사진 1매(신청서용)
- ③ 신워진술서 3부(14세이상자)
- ④ 호적등본
- ⑤ 여권 및 여권사본
- ⑥ 영주권
※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 장기체류하는 경우는 장기체류허가증(재입교포는 재입국허가서와 외국인등록증)으로 영주권에 갈음함
- ⑦ 병역관계서류(18세이상 30세이하 남자)

(4) 특기사항

- 거주여권 소지자의 국내체재기간

거주여권 소지자는 재입국후 국내 체재기간이 2년을 초과할 때에는 여권 유효기간 이내라도 국내 체재기간이 2년이 되는 날에 여권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단, 병역의무자의 경우에는 국내 체재기간이 1년이 되는 날에 여권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할 경우에도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외교통상부장관의 체재기간 연장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내에 2년이상 체류하게 되는 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 ② 국외에 3년이상 거주한 자로서 미화 10만불 상당이상을 국내에 투자한 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 ③ 외국상사의 국내지사 등의 임·직원으로서 당해 상사로부터 급료를 지급 받는 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 ④ 국내에 2년이상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의 배우자 및 국제입양자(군인가족 포함)
- ⑤ 3년이상 국외에 거주한 재외국민으로서 국내에 유학증인 자(외국인 학교는 제외)
- ⑥ 60세 이상인 자
- ⑦ 기타 인도적으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외교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입국 만료일 이전에 사유가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국내 체재기간연장

국내 체재기간연장을 위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여권기재사항변경등신청서
- ② 여권 및 여권사본(신워정보란 및 최종 입국일자 날인된 페이지)
- ③ 병역관계서류(18세이상 30세이하 남자)
- ④ 사유서
- ⑤ 영주권, 이민사증 또는 재입국허가서 사본
- ⑥ 증빙서류

* 군인가족 : ID카드 및 동 사본, 영주권 및 동 사본

남편의 전출입명령서(일명 : ORDER)

- ※ 투자자 : 투자허가서, 사업자등록증
- ※ 외국상사 국내지사 임·직원 : 재직증명서
- ※ 학생 : 재학증명서

병역미필자로서 1년이상 국내체재할 경우에는 병역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관 담당

최초 거주여권 발급업무는 외교통상부 또는 재외공관에서 담당하며 시·도는 거주여권 소지자의 거주여권 재발급·유효기간 연장업무만 담당합니다.

6.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재외동포법에 의하여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그중 이곳에서는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나머지 부분은 각 해당부분에서 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의료보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가 90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때에는 의료보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의 신청으로 건강보험 가입자가 될 수 있다고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①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외국인

-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국적동포
-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 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 연수취



업(E-8)의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1년 이상 체류할 자 및 그 배우자와 20세 미만의 자녀(F-3)

–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및 그 자녀

– 거주(F-2) 자격으로 국내에 장기 거주하는 자

② 재외국민(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 사업, 교육 등의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

나. 국민연금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민」에는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국민을 포함합니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는」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통상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소를 두는 경우라고 해석합니다. 해외유학생이나 우리나라 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되어 근로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또한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는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에서 제외하는 자 이외의 외국인은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따라서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중인 외국국적 동포도 일정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됩니다. 다만 상호주의에 의하여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4장 가족관계법

1. 친족제도

가. 친족의 범위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입니다. 과거에는 남녀를 차별하여 아버지 쪽은 8촌까지, 어머니 쪽은 4촌까지를 친족으로 하였고 인척의 경우는 여자가 혼인을 하면 남편의 아버지 쪽으로 8촌, 남편의 어머니 쪽으로는 4촌까지 모두 그 여자와 인척이 되는 반면, 남자가 혼인한 경우에는 장인·장모만 인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혁행 미법은 친가와 외가를 구분하지 않고 8촌까지의 혈족은 모두 친족이며 인척관계에서도 남녀의 구별을 제거하였습니다.

나. 재산분할청구권

이혼시에는 부부가 혼인 후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원만한 때에는 부부의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있는지 별로 문제되지 않으나 혼인이 해소된 때에는 부부의 재산관계를 정산·정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생활 중 부부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는 배우자가 협력한 공로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혼의 경우 그 기여분을 배우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여 재산분할청구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에서 재산의 액수와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금액과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2. 상속제도

가. 상속분

자녀의 경우 아들·딸 구별없이, 결혼 여부나 연령과 상관없이 상속분은 똑같습니다.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언이 우선하나 유언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자녀들의 상속분은 균등하며, 배우자는 자녀 상속분의 1.5배를 상속받습니다. 출가한 딸도 상속지분이 동일합니다.

상속재산형성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부모를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상속이 가능하나 상속한 토지의 계속 보유에는 뒤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외국인토지법」상 제한이 있습니다.

나. 유언의 방식

유언은 민법이 정하는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는 바, 민법에서는 유언의 방식으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언의 방식에 따라 증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나 미성년자,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신이 직접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할 경우에도 유언자가 직접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 녹음에 의한 유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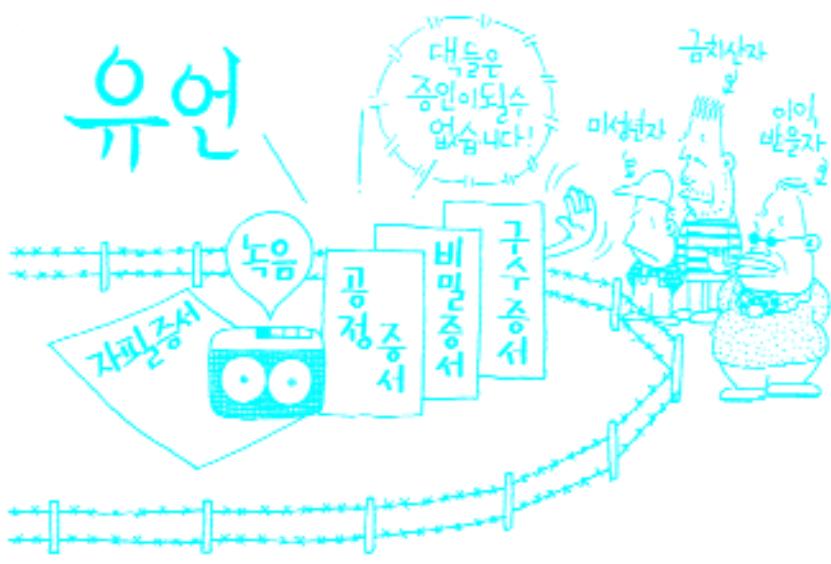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합니다.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직접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작성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봉투에 넣어 봉함 부분에 날인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투겉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유언봉투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앞에서 설명한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이 있는 자리에서 유언의 취지를 밀하고 이를 들은 증인이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확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이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 상속재산의 분할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즉, 법정상속분과 달리 상속지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이를 나누어 취득하게 됩니다.

3. 혼인에 관한 국제사법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하고, 그 방식은 혼인거행지의 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에 의하게 됩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거행하는 경우 당사자 일방이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대한민국 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혼인의 효력은 ①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②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③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계이 있는 곳의 법의 순위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부재산제는 원칙적으로 혼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일자와 부부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① 부부중 일방이 국적을 가

지는 법 ② 부부중 일방의 상거소지법 ③ 부동산에 관한 부부재산제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 중 어느 것을 선택하기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워낙적으로 혼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부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후 대한민국 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상속에 관한 국제사법

상속에 관한 즈거법은 워낙적으로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1) 지정 당시 피상속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다만, 그 지정은 피상속인이 사망시까지 그 국가에 상거소를 유지한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2) 부동산에 관한 상속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 중 어느 것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법에 의합니다. 따라서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 상속인들의 상속분이 얼마나 되는지,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모두 상속에 관한 즈거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상속인이 되기 위한 전제가 되는 피상속인과의 혼인관계, 친자관계, 친족관계는 각각 그에 따른 즈거법에 의해 규율됩니다.

5. 재외국민에 대한 이혼관계 특칙

가. 재외국민의 협의이혼절차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를 확인을 신청합니다. 만일 관할 재외공관이 없으면 이전 재외공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외공관장은 당사자 쌍방에게 이혼의사의 존부 및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 그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의 지정여부를 확인하고, 그 요지를 기재한 서면('진술요지서'라고 함)을 작성하여 신청서에 첨부, 서울가정법원에 송부합니다.